

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[이인식 의원 발의]

의안번호	2447
------	------

발의일자 : 2023. 11. 15.

발 의 자 : 이인식 의원

찬 성 자 : 고성미, 엄삐별,
도병두 의원

1. 제안이유

최근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바,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인권 증진 및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- 나.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(안 제2조 및 제3조)
- 다. 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5조)
- 라.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(안 제6조 및 제7조)
- 마. 협력체계 구축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영유아보육법」 제4조

2)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예산조치

다. 기 타

1) 입법예고: 2023. 11. 16. ~ 2023. 11. 22.

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과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영유아보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2조에 따른다.

제3조(구청장 책무)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

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
2.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4.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
5.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,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

제6조(실태조사)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, 인권 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

수 있다.

제7조(지원사업)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보육교직원의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
2.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지원사업
3.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
4. 보육교직원의 처우 및 복리 증진 사업
5.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
6.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8조(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□ 「영유아보육법」

[시행 2023. 8. 8.] [법률 제19606호, 2023. 8. 8., 일부개정]

- 제4조(책임)**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,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23. 9. 22.] [법률 제19241호, 2023. 3. 21., 일부개정]

-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마.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·운영

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
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·관리

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
자. 청소,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

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